

## 신규대비표

현행	개정(안)	비고
<p>제3조(정의)</p> <p>1~3. 생략</p> <p>4. "입고"는 물품의 인수와 설치 및 성능을 검증하는 <u>현업부서의 성능검수를 말한다.</u></p> <p>5. "<u>서비스 입고"는 현업부서에서 공사, 용역의 적정이행여부를 판단 및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.</u></p> <p>6. "검수자"라 함은 <u>현품검수를 하는 자로서, 전담검수부서 소속의 전담검수자와 현업부서 소속의 현업검수자가 있다.</u></p> <p>7. "입고자"라 함은 입고와 서비스 입고를 하는 자를 말한다.</p> <p>8~21. 생략</p>	<p>제3조(정의)</p> <p>1~3. 좌동</p> <p>4. "입고"는 물품의 인수와 설치 및 성능을 검증하고 <u>공사, 용역의 적정 이행여부를 판단 및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.</u></p> <p>5. 삭제</p> <p>6. "검수자"라 함은 대학에 납품 되는 물품을 검수하는 자로서, 전담검수부서 소속의 검수자를 둔다.</p> <p>7. "입고자"라 함은 대학에 납품 되는 물품을 입고처리하는 자를 말한다.</p> <p>8~21. 좌동</p> <p>22. "<u>온라인몰 구매"라 함은 인터넷 쇼핑몰을 통한 구매로서 주문정보, 배송정보, 결제정보가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구매를 말한다.</u></p>	<p>검수관련 용어 정의 변경 22호 신설</p>
<p>제4조(검수기준) <u>대학의 검수기준은 다음과 같다.</u></p> <p>1. 자산성: 전부</p> <p>2. 비자산성: 3백만원 초과/건당</p>	<p>제4조(검수기준) ① 대학이 구매하는 모든물품(자산, 비자산)은 검수절차에 따라 검수자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.</p> <p>② 엔투비 구매건에 대한 검수는 검수자가 비정기적 샘플링 검수를 실시한다.</p> <p>③ 용역 및 공사는 검수자가 검수를 하지 않고 구매부서 담당자가 입고로 처리한다.</p>	<p>중앙검수 도입에 따른 검수기준 변경</p>
<p>제5조(검수대상) ① 대학의 검수대상은 다음과 같다. 단, 용역 및 공사는 서비스 입고로 처리한다. (개정: 2018.1.1)</p> <p>1. 전담검수: 구매요청건</p> <p>2. 현업검수: 소액구매(자산), 단가계약</p> <p>② 엔투비 검수 건에 대해서는 전담검수자가 비정기적 샘플링 검수를 실시한다.</p>	<p>제5조(검수대상) 대학이 구매하는 모든 물품(자산, 비자산)을 검수대상으로 한다. 단,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구매는 검수대상에서 제외한다.</p> <p>1. 온라인몰 에서 구매한 3백만원 이하/건당 물품구매</p> <p>2. 연간(단가)계약 체결하고 구매한 모든구매</p> <p>3. 외자로 구매한 3백만원 이하/건당 물품구매</p> <p>② 삭제</p>	<p>중앙검수 도입에 따른 검수대상 변경</p>

<p>제17조(검수전 사용금지) <u>검수대상이 되는 물품에 대해 검수를 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. 다만, 긴급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검수하기 전에 사용하여야 할 물품이 있을 때에는 <u>사전에</u> 검수자에게 통보하고 지체없이 사후검사를 받아야 한다.</u></p>	<p>제17조 (사후검수) ① 긴급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검수하기 전에 사용하여야 할 물품이 있을 때에는 검수자에게 통보하고 지체없이 사후검수를 받아야 한다.</p> <p>② 사후검수 절차는 납품명세서와 입고된 물품의 증빙자료 제출로 현업 검수를 실시한 다음 전담검수자에게 사후검수 처리를 요청한다.</p>	<p>2항 신설하여 사후검수 근거 및 절차 마련</p>
<p>제18조 (검수거부) ① 검수자와 확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검수를 거부 할 수 있다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검수 물품에 이상이 있을 때</li> <li>2. 검수 물품을 사전에 사용하였을 때</li> </ol> <p>② 생략</p>	<p>제18조 (검수거부) ① 검수자와 확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검수를 거부 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검수 물품에 이상이 있을 때</li> <li>2. 승인없이 검수 물품을 사전에 사용하였을 때</li> </ol> <p>② 좌동</p>	<p>사후검수 보완</p>